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8. 25.(화) 총 3매 (본문3)	
담당 부서 도시재생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황윤언, 사무관 박선영, 전문위원 김종근 • ☎ (044) 201-4903, 4907, 4909	
보 도 일 시	2020년 8월 2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25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도시재생,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기대

- 8월25일, 『도시재생법 시행령』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 -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, 사업효과 가시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, 인정사업 및 혁신지구 등 신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.
-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

-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은 단순 시행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으나,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.
 - 그러나,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되어, 이 외의 공공기관은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.

-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,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*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,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이 되, “공기업”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이며, “준정부기관”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정함

- 특히, 산업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,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.

②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명확화 및 대상 확대

-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었으나, 소규모 점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.

- 지난해 말 12곳의 인정사업 시범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, 특히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안전위험건축물인 영진시장 긴급정비사업이 인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그간 세입자 등지 내몰림 등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.

- 동 개정안은 인정사업 선정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, 원칙적으로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하여 타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인 지역은 제외하였다.

- 다만,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,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,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.

- 또한,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- 이에 따라,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하여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
③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

- 현재 혁신지구*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, 지식산업센터,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과도한 공급가가 형성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.

* 혁신지구 : 공공이 산업·상업·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원도심 등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, 기반시설(주차장, 도로, 공원 등), 생활 SOC, 공공시설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등을 통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음

-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,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,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.

□ 국토부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”며, “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박선영 사무관(☎ 044-201-49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